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무제공플랫폼사업에 대한 고용보험이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신설에 따라 적용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58호, 2021. 1. 5.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직종으로 추가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노무제공플랫폼사업의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방법, 월 보수액 신고, 제공해야 하는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업급여 보험료율 조정(안 제12조, 제56조의5, 제56조의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의 고용유지, 청년 등 고용창출을 위한 지출로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되어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을 조정(0.2%p)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각각 0.1%p 분담 하도록 함

나. 예술인·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3조, 제19조의3)

기준보수 관련 규정이 2개 조문으로 나누어져 있어 한 개 조문으로
일원화하고 기준보수 적용 대상 및 제외자를 명확히 규정함

다. 노무제공플랫폼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신고 대상 등 규정

(안 제19조의3, 제56조의7)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월보수액을
신고하도록 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 원천공제 방법
등을 구체화함

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안 제28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노무제공플랫폼 종사자 중 단기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서’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서도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인”을 “예술인”으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예술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

제3조제4항제2호 중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된 노무제공자”를 “노무제공자”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16”을 “18”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제5호 중 “제9호까지”를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 제104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는”을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6 중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을 “제3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적용하는 월단위 기준보수(이하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이라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을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제104조의13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주가”를 각각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로,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을 “확인신고서(「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104조

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제104조의1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을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 단서 중 “확인신고서에”를 “확인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업주”를 “지원금 수급자”로 한다.

제56조의5제2항 중 “14로”를 “16으로”로 한다.

제56조의6제3항 중 “14로”를 “16으로”로 한다.

제56조의7부터 제56조의13까지를 각각 제56조의8부터 제56조의14까지로 하고, 제5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8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관련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시작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3. 노무제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 및 노무제

공대가)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원천공제하여 이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는 보험가입자별로 산정한다.

제56조의13(중전의 제56조의12)제5호 중 “법 제16조의3제4항”을 “제19조의3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4. 법 제48조의4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적용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② (생 략)	제3조(기준보수의 적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 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3 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예술인의 보수액으로 한다.	③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예술 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 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 보수보다 적은 경우 <단서 신 설>	2. <u>예술인</u> ----- ----- ----- ----- 경우. 다만, 예술 인 중 「고용보험법」 제77조 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 인”이라 한다) 및 「고용보험 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 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 족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
④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8조의3제6항제2호에서 준용 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2	④ ----- ----- ----- -----

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으로 한다.

1. (생략)

2. 제19조의3제5항에 따라 통보된 노무제공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제2항제4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단서 신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1천분의 16

② ~ ④ (생략)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

1. (현행과 같음)

2. 노무제공자-----

-----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제12조(고용보험료율)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18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 4. (생략)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6. (생략)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제4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 및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는 제

-----.

1. ~ 4. (현행과 같음)

5. -----
-----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

6. (현행과 같음)

④ -----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고용
보험법」 제77조의7제1항에 따
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주를 말
한다. 이하 같다)---. --- 사업
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4조의11제3항·제4항, 제104
조의13제1항-----

-----.

⑤ -----
----- 사업주 또는

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자가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⑦ (생략)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

---.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 ② (생 략)
 ③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란 근로자인 피보험자,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유사 직종·분야 근로자,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보수수준,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

 ----- 제3조제3
 항제2호에 해당하여 적용하는
월단위 기준보수(이하 “월평균
 보수의 하한액”이라 한다)-----

 -----.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액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제19조의3에 따라 산정한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제104조의12제2항에 따라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월별로 지급된 보수액

2. (생략)

④ · ⑤ (생략)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
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 제16조의7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

1. -----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 · 제
104조의12제2항 · 제104조의1
3제2항-----

2.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
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 · 제104조의12제2항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1. ~ 3. (생략)

4.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고용보험료의 지원기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

----- 확인신고서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이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 한다) 또는 같은 영 제104조의6제2항 · 제104조의12제2항 · 제104조의13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4. -----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제77조의10제1항-----

③ -----
사업주 또는 노무제공플랫폼사

간 중에 지원대상이 되는 노무
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제19
조의3제5항에 따른 통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지
원하지 않는다.

④ · ⑤ (생략)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받은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람에게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를 이행한 날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

업자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고용보험료 신고·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화

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고용보험료만을 지원한다.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생략)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환수금액을 고지·징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생략)

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③ ~ ⑥ (생략)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48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인신고서(“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포함한다) -----.

제30조(고용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원금
수급자-----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6
으로-----.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의6(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6
으로-----

-----.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6조의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① 법 제48조의4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 관련
자료 또는 정보: 사업장의 명칭·주소, **사업주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자(또는 법인)등록번호 및 노무제공플랫폼 이용 시작일 또는 종료일

2. 노무제공자 인적사항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3. 노무제공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노무제공계약 시작일 또는 종료일, 직종, 월보수액(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 및 노무제공대가)

②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할 고용보험료에

18. ~ 23. (생략) <u>제56조의13</u> (생략)	<u>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의 적용</u> <u>등에 관한 사무</u> 18. ~ 23. (현행과 같음) <u>제56조의14</u> (현행 제56조의13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연 락 처	(044) 202 - 7359